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자 관리

제1조 (이용대상 및 이용정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간보호센터 및 치매전담실 이용정원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에 신고하여 허가 받는 인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2. 의료급여특례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3.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4. 장기요양등급 외자 중 센터장이 요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

제2조 (모집방법)

인터넷, 지역 내 성당, 전단지, 기타 매체를 통한 기관의 급여종류 및 관련사항을 홍보하여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면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하면 안 된다.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의 명확화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기관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서비스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방지한다.

제2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3조 (이용계약)

1.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
 - 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승낙서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급판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다.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등

제4조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갱신이나 등급변경 시 이용자 및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입소자가 9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마.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바.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사. 입소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아.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자.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변경 경우)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사전통지 후 합의하에 변경을 한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 중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일반은 15%, 경감대상 9%, 경감대상 6%, 기초수급권자는 0%와 그 외 비급여 항목(식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비용 청구한다.(단, 비급여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고 변경 시 보호자나 이용자와 협의 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보호 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이용료 변경 경우: 이용료 변경의 경우(예: 비급여 항목)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

자의 가정에 사전통지 후 합의하에 인상한다. 합의는 문서 내 합의동의 란에 이용자(보호자)의 서명(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3.01.01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2023.01.01기준
분류번호	분류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44,980
		장기요양 3등급	33,010	41,520
		장기요양 4등급	31,510	39,620
		장기요양 5등급	30,000	37,730
		인지지원등급	30,000	37,730
라-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60,330
		장기요양 3등급	44,270	55,680
		장기요양 4등급	42,770	53,800
		장기요양 5등급	41,240	51,880
		인지지원등급	41,240	51,880
라-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75,0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69,2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67,400
		장기요양 5등급	52,050	65,470
		인지지원등급	52,050	65,470
라-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82,690
		장기요양 3등급	60,720	76,380
		장기요양 4등급	59,190	74,440
		장기요양 5등급	57,690	72,550
		인지지원등급	52,050	65,47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88,640
		장기요양 3등급	65,110	81,920
		장기요양 4등급	63,600	80,0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78,100
		인지지원등급	52,050	65,470

비급여 항목 (1일당)		
식대비(원)	점심	1,500원
	저녁	2,000원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1일당)		2023.01.01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제6조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이용자(보호자)에 통보 후 동의하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6.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7.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이용자(보호자)는 계약 시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관에서 원하는 정보(질병 및 기타 필요사항)를 정직하게 제공하여야만 한다.
9. 이용자(보호자)는 계약 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 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0. 이용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시 정당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11.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12.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1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14.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15.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1. 본 기관은 장기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양질의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요양 서비스, 치매전담실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 기관은 요양 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본 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4.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식사비로 하고, 그 외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외 개별적 욕구에(병원진료, 미용실 이용 등) 따른 비용은 전액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정 기관운영비 통장으로 납부 받고, 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